

의안번호	2206517
의 퇴 인	김위상 의원
회 답 일	2025. 2. 14.
추계번호	24B532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연구주체의 장(제10호의 경우에는 이차전지 관련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함(제1항) 10. 연구실 내 이차전지의 취급 관리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진압대책에 관한 사항 (제10호 신설)	의무규정
2	안 제20조 (교육·훈련) 제5항 신설	제2항 ¹⁾ 에도 불구하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이차전지소재, 이차전지설계 또는 이차전지제어관리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실 내 이차전지의 취급 관리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진압 등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2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0조(교육·훈련) 제5항 신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상세 사유

□ 이차전지 취급 관련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교육·훈련 실시(안 제12조제1항 및 안 제20조제5항)

- 현행법은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차전지²⁾ 관련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장의 경우 안전관리규정 작성 시 연구실 내 이차전지의 취급 관리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진압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연구실 내 이차전지의 취급 관리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진압 등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2024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기준으로 대학 335개, 연구기관 191개, 기업부설연구소 4,080개 등 4,606개 기관임

[표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기관 현황('24년 실태조사 기준)

기관 유형		기관 수(개/%)		비중(%)
대학	소 계	335		7.3
	국·공립	53	15.8%	
	사립	282	84.2%	
연구기관	소 계	191		4.1
	국·공립	82	42.9%	
	정부출연	23	12.0%	
	특정연구기관	8	4.2%	
	민법·기타법인	78	40.8%	
기업부설연구소 ¹⁾		4,080		88.6
총 계		4,606		100

주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이차전지”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중 국·공립 대학과 국·공립 연구기관의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교육·훈련 실시 사례를 살펴보면,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변경은 현행법 제11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³⁾에서 협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고 있고, 교육·훈련은 각 기관의 유형(공공기관, 대학, 사업장 등)에 따라 다수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적용되어 관련 교육·훈련별 예산을 집행 중인 것으로 보임

[표 2] 안전관리규정 작성 등 관련 예산 집행 사례('24년 기준)

기관	유형	안전관리규정 관련 예산 집행현황	
		집행내역	미집행 사유
OO연구원 (국·공립 연구기관)	출연연	없음	안전관리규정 작성은 안전보건 전담 부서의 고유업무로서 별도의 예산이 요구되지 않음
OO대학 (국·공립 대학)	대학	없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 3] 교육·훈련 예산 집행 사례('24년 기준)

기관명	유형	교육훈련 실시 관련 예산 집행현황			
		근거	실시내용	내역	비용
OO연구원 (국·공립 연구기관)	출연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¹⁾	긴급대응 소방훈련 (화재 진압훈련)	훈련수당 교보재	약 3,000천원
			화재 대피훈련	—	0원

- 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계획의 수립
 3. 제1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4. 제22조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 계획의 수립
 5.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6.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 ③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기관명	유형	교육훈련 실시 관련 예산 집행현황			
		근거	실시내용	내역	비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²⁾	정기안전보건교육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	약 19,000천원
			특별안전보건교육 (현장교육)	강사료	약 19,200천원
			관리감독자교육 (온라인, 현장)	강사료	약 5,500천원
		총계		약 46,700천원	
OO대학 (국·공립 대학)	대학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연구실 안전 교육	강사비 등	41,865천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사고대응 훈련 ³⁾	훈련비	4,588천원
		총계		46,453천원	

주 1)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에 적용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 및 화재 관련 교육·훈련

2) 해당 출연연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정기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실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같음

3) 행정안전부 '24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비용(연구실 화재대피 훈련 포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이차전지 관련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관리규정 작성 시 연구실 내 이차전지의 취급 관리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진압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할 경우 현행과 같이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교육·훈련의 경우 개정안이 이차전지 취급 관리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진압 등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 시점에서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중 이차전지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수 및 이차전지 취급 관리에 따른 화재 예방 및 진압 교육의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연구실 안전·유지관리비 확보 및 집행 현황

□ 2024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연구실안전법 적용 대상기관의 연구실 안전·유지관리비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연구실 안전·유지관리비 현황('24년 실태조사 기준)

기관 유형	확보		집행	
	기관 수(개)	비율(%)	기관 수(개)	비율(%)
대학	334	99.7	334	99.7
연구기관	189	99.0	189	99.0
기업부설연구소 ¹⁾	3,400	83.3	3,346	82.0
총 계	3,923	85.2	3,869	84.0

주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